#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5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추미애·송옥주·전재수

박균택 • 부승찬 • 전종덕

신영대 • 박희승 • 박선원

오세희 • 한정애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, 재판을 위한 법원, 국회의 국정조 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루는 주가조작, 뇌물수수,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며,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·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정감사·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,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##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제3호 중 "국정조사"를 "국정감사·국정조사 또는 「인사청문회법」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(「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"로, "조사위원회"를 "위원회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국정감
사,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부터 적용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아 혅 행 개 정 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 ① -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 의인(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)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(이하 "거 래정보등"이라 한다)를 타인에 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, 누구든지 금융회사등 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 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 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 ----- 국정감사 · 국정 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 조사 또는 「인사청문회법」 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 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장(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는 위원회(「국정감사 및 조

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(「예금자보호법」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거래 정보등의 제공

4. ~ 8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	1항
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변	<u> 을</u>
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	같
<u>다)</u> <u>위원회</u>	
4. ~ 8. (현행과 같음)	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